

평창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1
----------	-----

제출연월일 : 2000.9. 14 .

발 의 : 이경진의원외2인

1. 제안이유

1999.12. 31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 국내·외
여비조정이 있었으나 2000. 1. 8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대통령령 16691호)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인상 조정비율에
따라 재조정하여 의원여비를 현실화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일비, 숙박비를 공무원 인상비율에 따라 인상
(별표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마, 기 타 : 없 음

평창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2] 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4조 제2항과 관련)

(단위:미불화)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 박 비 (1야당)	식 비 (1일당)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이상
의 장 · 부 의 장	·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있는 경우에는 최상급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있는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선박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1등정액	실비액	가등급35	가등급151	가등급107	140	170	195
					나등급35	나등급109	나등급 78			
의 원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 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등정액		가등급 30	가등급132	가등급 81	130	155	180
					나등급 30	나등급 86	나등급 59			
					다등급 30	다등급 64	다등급 44			
					라등급 30	라등급 56	라등급 37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마드리드, 동경, 홍콩, 모스크바

나. 나등급

- (1) 아세아주 · 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싱가포르, 대만, 북경, 하노이
- (2) 남 · 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엔젤리스, 샌프란시스코, 자메이카,
- (3) 유 럽 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
- (4) 중동 · 아프리카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루운,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다. 다등급 :

- (1) 아세아·대양주 :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부루나이,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
도스, 브라질,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 (3) 유럽주 : 아일랜드, 포르투갈, 회랍,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
슬라비아,
- (4) 중동·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

라. 라등급

- (1) 아세아주·대양주 : 미얀마, 스리랑카, 휘지, 네팔, 몽골
- (2) 남·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구아이
수리남
- (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
- (4) 중동·아프리카주 :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이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일 비	숙 박 비	구 분	일 비	숙 박 비
의장 · 부의장	가등급 25	가등급 137	의장 · 부의장	가등급 35	가등급 151
	나등급 25	나등급 99		나등급 35	나등급 109
	다등급 25	다등급 76		다등급 35	다등급 84
	라등급 25	라등급 65		라등급 35	라등급 72
의 원	가등급 20	가등급 120	의 원	가등급 30	가등급 132
	나등급 20	나등급 78		나등급 30	나등급 86
	다등급 20	다등급 58		다등급 30	다등급 64
	라등급 20	라등급 51		라등급 30	라등급 56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회기수당(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7 및 별표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 [별표8]

(단위 미불화)

지 급 기준액		항공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 비 금		
						15일 미 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시도	의장· 부의장	1등정액	30	169	133	150	180	210
	의원	1등정액	25	137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구	의장· 부의장	1등정액	25	137	107	140	170	195
	의원	2등정액	20	120	81	130	155	180

비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별표4(개정 2000. 1. 8) ⇒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제1항관련

국 외 여 비 정 액 표

(단위 : 미불화)

구 분	등급	일 비	숙박비	식 비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한 특호의 가목 해당자	가	80	1,662	214
	나	80	969	156
	다	80	842	117
	라	80	579	98
동표 특호의 나목 해당자	가	70	938	201
	나	70	418	146
	다	70	336	110
	라	70	279	91
동표 특호의 다목 해당자	가	60	352	186
	나	60	279	136
	다	60	212	102
	라	60	149	85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가	50	264	160
	나	50	200	117
	다	50	160	87
	라	50	132	73
동표 특호의 라목 해당자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제외)와 동표 제1호 해당자	가	40	186	133
	나	40	135	99
	다	40	107	72
	라	40	91	61
동표 제2호 해당자	가	35	151	107
	나	35	109	78
	다	35	84	58
	라	35	72	49
동표 제3호 해당자와 준위인 군인	가	30	132	81
	나	30	86	59
	다	30	64	44
	라	30	56	37
동표 제4호(준위 제외)해당자	가	26	117	67
	나	26	79	49
	다	26	58	37
	라	26	51	30